



## 금융위,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연금저축<sup>1)</sup>의 소비자 만족도 향상과 연금저축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.

- 연금저축 적립금 규모는 2007년 이후 10%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말 약 68조 2,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과세대상 근로자의 약 25%만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대비 자금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- 연금저축의 ‘낮은 수익률’, ‘상품 간 비교의 어려움’, ‘낮은 유지율’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.
  - [낮은 수익률] 금융기관들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
  - [상품 간 비교의 어려움] 판매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수수료 체계
  - [낮은 유지율] 중도해지 시 소득세 부과로 세제 혜택 효과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의 10년차 계약유지율이 약 30% 정도에 불과함.
-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 대비 자금 마련에 기여하고자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.

■ 개선방안에는 수익률, 수수료 등 연금저축에 대한 통합공시 방안과 더불어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.

- 소비자 또는 가입자들이 연금저축과 관련한 사항들을 한 곳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통합 공시(one-stop service)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.
  - 연금저축 실수익률(원금 대비 수익률)과 수수료 공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.
  - 금융회사들의 계약 유지율 및 이진율 등 연금저축 유지·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할 계획임.
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요건(10년 이상 불입,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수령)을 충족할 경우 연 납입액(400만 원 한도)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함.

- 연금저축 해지 시 차감하는 금액(계약자 몫에서 세금 추징 등)이 크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등 가입 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, 금융권역 간 계약이전 시 수수료 체계 및 규모도 설명하여 불필요한 계약이전을 방지함.
-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와 같은 정책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권역별 수수료 체계 효율화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연금저축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의 효율적 관리·감독을 위한 통합적 감독근거를 마련할 계획임.

(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시 및 관리 강화, 금융위, 4/4)